

2026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기준



응시자격기준은 시도 소방본부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자격(면허), 인정 실무경력 등 세부 사항은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채용예정분야

시도별	전화번호	주소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6~92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http://119gosi.kr)
서울소방학교 인재채용팀	02-2106-3621~3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https://fire.seoul.go.kr/academy/)
부산 소방행정과	051-760-3023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16 (https://119.busan.go.kr/119examinfo)
대구 소방행정과	053-350-40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49길 30, 2층 소방행정과 (http://www.daegu.go.kr/119)
인천 소방행정과	032-870-301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https://www.incheon.go.kr/119/index)
광주 소방행정과	062-613-8022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https://www.gwangju.go.kr/)
대전 소방행정과	042-270-619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https://www.daejeon.go.kr/dj119)
울산 소방행정과	052-229-4523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2별관 3층 소방행정과 (https://fire.ulsan.go.kr/)
세종 소방행정과	044-300-801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618호 (https://www.sejong.go.kr/fire/index.do)
경기도 인사담당관	031-230-292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https://119.gg.go.kr/)
강원 소방행정과	033-249-510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신관1층 (https://fire.gwd.go.kr/fire/partici/parti_recruitment)
충북 소방행정과	043-220-4824	충북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로 57 (https://cb119.chungbuk.go.kr)
충남 소방행정과	041-635-556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http://www.cn119.go.kr/index.cn119)
전북 소방행정과	063-280-384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16층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 (https://www.sobang.kr/index.sobang)
전남 소방교육과	061-860-4726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우산길 212-43 (https://www.jnsobang.go.kr/jnsobang/commu/test/)
경북 소방행정과	054-880-6155 054-880-6152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exam_info/index.html)
경남 소방행정과	055-211-532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
제주 소방정책과	064-710-35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9길 22 (http://www.jeju.go.kr/119/notice/exam.htm)
창원 소방정책과	055-548-9316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https://www.changwon.go.kr/119/)

분 류 번 호	01	채 용 분 야	건축
시 험 절 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												◎			
경 력 ②																			
학 위 ③																			

- 주 요 업 무**
- 청사 건립(공사감독),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 건축 관련 업무
 - 청사 신축 및 개·보수 지도 감독 등
 - 소방청사 설계용역, 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보강 등에 관한 업무
 - 화재안전조사, 위반건축물 확인,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점검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기본자격	산업기사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타자격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기타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

① 자격증

-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인정 실무경력

-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 내용의 "나. 건축공사업" 또는 "다. 토목건축공사업"에서 근무한 경력
- ② 「건축사법」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위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
- 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5] 전문분야 "설계·사업관리"에서 "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 중 "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④ 소방관서 화재안전조사(구.소방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건축분야" 중 조사인력(보조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

② 경력 ■ 해당없음

③ 학위 ■ 해당없음

비고 ○ (대구) 청사 신축(공사감독) 및 관리부서에서 근무

분류번호	02	채용분야	구급
시험절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	○	○	○	○	○	○	○	○	○	○	○	○	○	○	○	○	○
경력 ②																			
학위 ③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및 응급처치 지도 ○ 재난현장에서 다수사상자 중증도 분류와 응급환자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 항공구급대원, 안전체험관 교관, 교육대 교관, 구급 행정업무 수행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¹⁾ 또는 간호업무²⁾ 경력**이 있는 사람

- 1)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2)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임산부의 영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 **자격증:** (기본자격) 간호사 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기타자격) 의사면허증
 ※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기타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

- **경력요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체 근무한 경력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¹⁾·사회복무요원²⁾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1) 의무소방대관리규칙 별지6(의무소방 복무확인 증명서) 제출(소속기관의 장이 발급)
 2) 사회복무요원포털 접속 →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출력 후 제출
- ⑨ **군(병·부사관·장교) 의무 관련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또는 군경력증명서 상 간호·응급구조·의무·보건 직책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직책명 미 기재시 "군의무관련 근무경력 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① 자격증

- ② **경력** ■ 해당없음
- ③ **학위** ■ 해당없음
- 비고**

분류번호	03	채용분야	소방정(기관사)
시험절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						◎				◎		◎				
경력 ②																			
학위 ③																			

- 주요업무**
- 소방정 운영과 관리, 해상 인명구조 활동 등
 - 소방선박 기관 및 관련 장비, 물품 등에 대한 유지 관리 업무
 - 소방선박의 정박, 계류, 보급 관련 업무 및 연료 등 유류 저장·관리 업무
 - 해수 또는 내수상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업무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에서 보유(도입)하고 있는 선박의 규모에 따라 면허등급을 다르게 정하여 채용하오니 아래 표의 응시자격을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부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1~3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에 한함)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경기 충남 전남</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1~4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에 한함) </td> </tr> </table>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1~3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에 한함) 	경기 충남 전남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1~3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에 한함) 			
경기 충남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1~4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에 한함) 			
②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③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비고				

분류번호	04	채용분야	소방정(항해사)
시험절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							○			○		○		○		○
경력 ②																			
학위 ③																			

주요업무

- 수상에서의 화재진화, 구조, 구급활동에 관한 사항
- 소방선박 점검·정비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선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p>■ 시도에서 보유(도입)하고 있는 선박의 규모에 따라 면허등급을 다르게 정하여 채용하오니 아래 표의 응시자격을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부산</td> <td> <p>■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항해사 면허(「선박직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를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p>※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 (1~3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중 어선법 제2조1호에 따른 <u>어선에 의한 승무경력</u>은 제외)</p>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경기 충남 전남 경남 창원</td> <td> <p>■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항해사 면허(「선박직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를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p>※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 (1~4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중 어선법 제2조1호에 따른 <u>어선에 의한 승무경력</u>은 제외)</p> </td> </tr> </table>	부산	<p>■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항해사 면허(「선박직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를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p>※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 (1~3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중 어선법 제2조1호에 따른 <u>어선에 의한 승무경력</u>은 제외)</p>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창원	<p>■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항해사 면허(「선박직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를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p>※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 (1~4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중 어선법 제2조1호에 따른 <u>어선에 의한 승무경력</u>은 제외)</p>
	부산	<p>■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항해사 면허(「선박직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를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p>※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 (1~3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중 어선법 제2조1호에 따른 <u>어선에 의한 승무경력</u>은 제외)</p>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창원	<p>■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항해사 면허(「선박직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를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p>※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 (1~4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중 어선법 제2조1호에 따른 <u>어선에 의한 승무경력</u>은 제외)</p>				
② 경력	■ 해당없음				
③ 학위	■ 해당없음				
비고					

분류번호	05	채용분야	자동차 정비
시험절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												○	○			
경력 ②																			
학위 ③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자동차 정비와 관리(정기검사, 보험계약, 안전사고 처리 등) 전반에 관한 업무 ○ 소방자동차 납품검수 및 차량구조원리 관련 전문교육 ○ 이동정비 차량 운영, 소방장비규격심의회 등 관리에 관한 업무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p>■ 아래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군 경력은 제외)</p> <p>○ 자격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rowspan="2">기본자격</td> <td>산업기사</td> <td rowspan="2">자동차정비</td> </tr> <tr> <td>기능사</td> </tr> <tr> <td rowspan="3">기타자격</td> <td>기술사</td> <td>차량</td> </tr> <tr> <td>기능장</td> <td rowspan="2">자동차정비</td> </tr> <tr> <td>기사</td> </tr> </table> <p>※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기타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p>	기본자격	산업기사	자동차정비	기능사	기타자격	기술사	차량	기능장	자동차정비	기사
	기본자격		산업기사		자동차정비						
기능사											
기타자격	기술사	차량									
	기능장	자동차정비									
	기사										
	<p>○ 경력요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p>▶ 인정 실무경력</p> <p>① 소방차량(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 및 특장 소방자동차의 제조 또는 정비업무의 근무 경력</p> <p>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별표21의3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비업무의 근무 경력(자동차 정기검사, 판금, 도장 관련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p> <p>※ 자동차종합정비업은 관계 법령 개정 전 1급 공업사(1996년 이전)를 말함</p> </td> </tr> </table>	<p>▶ 인정 실무경력</p> <p>① 소방차량(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 및 특장 소방자동차의 제조 또는 정비업무의 근무 경력</p> <p>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별표21의3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비업무의 근무 경력(자동차 정기검사, 판금, 도장 관련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p> <p>※ 자동차종합정비업은 관계 법령 개정 전 1급 공업사(1996년 이전)를 말함</p>									
<p>▶ 인정 실무경력</p> <p>① 소방차량(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 및 특장 소방자동차의 제조 또는 정비업무의 근무 경력</p> <p>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별표21의3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비업무의 근무 경력(자동차 정기검사, 판금, 도장 관련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p> <p>※ 자동차종합정비업은 관계 법령 개정 전 1급 공업사(1996년 이전)를 말함</p>											
② 경력	■ 해당없음										
③ 학위	■ 해당없음										
비고											

분류번호	06	채용분야	정보통신(빅데이터)
시험절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교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									
경력 ②																			
학위 ③																			

주요업무

- 소방안전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및 안정적인 운영·관리 등
- 데이터기반의 소방정책 수립 및 재난상황분석
- 재난 대응전략 수립 및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p>■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 <u>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u>이 있는 사람</p> <p>○ 자격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자격</td> <td>기사</td> <td>빅데이터 분석</td> </tr> </table> <p>○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인정 실무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분석 기획 및 빅데이터 수집 및 모델링·개발·데이터 아키텍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알고리즘 모델 개발에 수행하며 근무한 경력 </div>	자격	기사	빅데이터 분석
자격	기사	빅데이터 분석		
② 경력	■ 해당없음			
③ 학위	■ 해당없음			
비고				

분류번호	07	채용분야	정보통신
시험절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						◎		◎	◎					◎	◎		◎
경력 ②																			
학위 ③																			

주요업무

- 지휘센터 유·무선 통신장비 운영, 소방서 정보통신 업무
- 종합상황실 정보통신, 정보보호, 정보관리팀 배치
- 긴급구조시스템 유지관리, 각종 프로그래밍 개발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p>■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u>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u>이 있는 사람</p> <p>○ 자격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기본자격</td> <td style="width: 15%;">산업기사</td> <td>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td> </tr> <tr> <td rowspan="3">기타자격</td> <td>기술사</td> <td>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td> </tr> <tr> <td>기능장</td> <td>통신설비</td> </tr> <tr> <td>기사</td> <td>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빅데이터 분석</td> </tr> </table> <p>※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기타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p> <p>○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인정 실무경력</p> <p>① S/W개발(연구·운영)·D/B설계(연구·운영)</p> <p>②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D/B, 스토리지, 보안장비) 구축·설계·운영</p> <p>③ 통신, 방송, 무선, 정보설비 구축·설계·운영</p> <p>④ 정보보안 기획·관제·운영·분석 및 침해사고 대응</p> </div>	기본자격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기타자격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빅데이터 분석
	기본자격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기타자격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빅데이터 분석									
<p>■ 해당없음</p>											
② 경력	<p>■ 해당없음</p>										
③ 학위	<p>■ 해당없음</p>										
비고											

분류번호	08	채용분야	정보통신(전산)
시험절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
경력 ②																			
학위 ③																			

주요업무

- 행정정보시스템 등 업무개발 및 유지보수
- 행정포털 및 연계시스템 관리
-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유출 사고 대응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p>■ 아래에 해당하는 <u>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p> <p>○ 자격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기본자격</td> <td>산업기사</td> <td>사무자동화, 정보처리</td> </tr> <tr> <td rowspan="2">기타자격</td> <td>기술사</td> <td>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td> </tr> <tr> <td>기사</td> <td>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td> </tr> </table> <p>※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기타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p> <p>○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p>▶ 인정 실무경력</p> <p>① S/W개발(연구·운영)·D/B설계(연구·운영)</p> <p>②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DB, 스토리지, 보안장비) 구축·설계·운영</p> </td> </tr> </table>	기본자격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타자격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p>▶ 인정 실무경력</p> <p>① S/W개발(연구·운영)·D/B설계(연구·운영)</p> <p>②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DB, 스토리지, 보안장비) 구축·설계·운영</p>
	기본자격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타자격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p>▶ 인정 실무경력</p> <p>① S/W개발(연구·운영)·D/B설계(연구·운영)</p> <p>②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DB, 스토리지, 보안장비) 구축·설계·운영</p>										
② 경력	■ 해당없음									
③ 학위	■ 해당없음									
비고	○ 정보화 전담부서에서 근무									

분류번호	09	채용분야	구조
시험절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경력 ②		◎	◎	◎	◎	◎		◎		◎		◎	◎	◎	◎	◎	◎	◎		
학위 ③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업무 ○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각종 재난 현장에서의 소방활동 ○ 소방(구조) 장비 관리, 운용 및 물품관리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②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부대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군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수부대 근무경력 중 임관을 위한 교육 기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특수부대 인정 범위 (육군) 육군특전사, 특공연대·대대(35특수임무대대 포함), 강습대대, 신속대응사단·여단(구.특공여단), 신속기동대대, 군사경찰특수임무대(구.헌병특수임무대), 대테러특수임무대, 수색대대·중대, 정보중대, 제1산악여단(구.8특공대대), 기동대대·중대, 지상정찰중대 (공군) 공군항공특수통제사(구.공군공정통제사), 공군항공구조사, 군사경찰특수임무소대(반)(구.헌병특수임무대), 7180부대 (해군) 해군정보부대(UDU), 군사경찰특수임무반(구.헌병특수임무대), 해군특수전전단[구.해군특수전여단(UDT)+구.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대) 해병대 특수수색대대(구.수색대대), 해병대 유격대대, 해병대 기습대대, 해병대 공정대대, 해병대 지상정찰소대, 해병대 저격반, 해병대 군사경찰특별경호대 (국방부 직할) 정보사, 화생방특수임무단(구.21·24특임대대) (기타 특수부대) 그 외 특수부대 근무경력자 ○ 특수부대 근무경력 인정 제출서류 - 군별 특수부대 복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제출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제출서류</th> <th>대표 발급처</th> <th>각 군 발급처</th> </tr> </thead> <tbody> <tr> <td>육군</td> <td rowspan="4">군경력증명서</td> <td rowspan="4">국방부 또는 각 군 홈페이지</td> <td>국방증명서 발급시스템(dcis.mnd.go.kr)</td> </tr> <tr> <td>해군</td> <td>해군역사기록관리단 기록물관리과</td> </tr> <tr> <td>공군</td> <td>역사기록관리단 인사자료관리과</td> </tr> <tr> <td>해병대</td> <td>해병대사령부 인사운영과</td> </tr> </tbody> </table>			구분	제출서류	대표 발급처	각 군 발급처	육군	군경력증명서	국방부 또는 각 군 홈페이지	국방증명서 발급시스템(dcis.mnd.go.kr)	해군	해군역사기록관리단 기록물관리과	공군	역사기록관리단 인사자료관리과	해병대	해병대사령부 인사운영과
구분	제출서류	대표 발급처	각 군 발급처														
육군	군경력증명서	국방부 또는 각 군 홈페이지	국방증명서 발급시스템(dcis.mnd.go.kr)														
해군			해군역사기록관리단 기록물관리과														
공군			역사기록관리단 인사자료관리과														
해병대			해병대사령부 인사운영과														
③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비고																	

분류번호	10	채용분야	심리상담
시험절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경력 ②					○							○			○		○	○	
학위 ③																			

- 주요업무**
- 현장활동 소방대원 등 심리지원 업무
 -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업무
 -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구축에 관한 사항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 해당없음
② 경력	<p>■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p> <p>※ 근무(연구)경력은 심리상담 연구·조사·분석,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자문 실무경력에 한함</p> <p>*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p>
③ 학위	■ 해당없음
비고	

분류번호	11	채용분야	소방관련학과
시험절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경력 ②																				
학위 ③		○		○		○		○		○	○	○	○			○			○	

- 주요 업무**
- 화재안전조사 및 자체 점검 관련 업무
 -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증명서 발급 관련 업무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접수 및 완비증명서 발급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 해당없음
② 경력	▪ 해당없음
③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의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전문 포함)학위를 취득한 사람 ▪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p>※ 소방관련학과 인정현황은 '참고자료 및 서식' 참고</p>
비고	

분류번호	12	채용분야	전기
시험절차	필기,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장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경력 ②																				
학위 ③			○		○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감정기관 및 공인시험기관(KOLAS)인정 추진 및 유지 업무 ○ 전기화재 감식 및 증거물 감정 업무 ○ 주요 전기·전자 시험기기 관리 업무 ○ 전기적인 요인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 원인 규명을 위한 전기 기기 재현실험 등 ○ 특정소방대상물 특별조사 및 시설물 관리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	---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 해당없음
② 경력	■ 해당없음
③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과·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유사학과 범위: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조사 및 증거물 감정부서 근무

분류번호	13	채용분야	기계
시험절차	필기,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장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경력 ②																				
학위 ③					◎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감정기관 및 공인시험기관(KOLAS)인정 추진 및 유지 업무 ○ 기계화재 감식 및 증거물 감정 업무 ○ 주요 기계·금속 시험기기 관리 업무 ○ 기계적인 요인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 특정소방대상물 특별조사 및 시설물 관리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	---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 해당없음
② 경력	▪ 해당없음
③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과·기계공학과·기계설계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유사학과 범위: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비고	○ 화재조사 및 증거물 감정부서 근무

분류번호	14	채용분야	화학
시험절차	필기,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교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경력 ②																				
학위 ③			◎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감정기관 및 공인시험기관(KOLAS)인정 추진 및 유지 업무 ○ 화재 감식 및 증거물 감정 업무 ○ 화학물질 요인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에 대한 사고예방 및 훈련 지도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	---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②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③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유사학과 범위: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조사 및 증거물 감정부서 근무

분류번호	15	채용분야	화학
시험절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												
경력 ②							○												
학위 ③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사고 대응,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개발 ○ 화학사고 관련장비 및 차량운영 ○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에 대한 사고예방 및 훈련 지도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	--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p>■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u>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p> <p>○ 자격증</p> <table border="1"> <tr> <td>기본자격</td> <td>산업기사</td> <td>화약류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험물</td> </tr> <tr> <td></td> <td>기술사</td> <td>화공</td> </tr> <tr> <td rowspan="2">기타자격</td> <td>기능장</td> <td>위험물</td> </tr> <tr> <td>기사</td> <td>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td> </tr> </table> <p>※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기타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p>	기본자격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험물		기술사	화공	기타자격	기능장	위험물	기사	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본자격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험물									
	기술사	화공										
기타자격	기능장	위험물										
	기사	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p>○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table border="1"> <tr> <td> <p>▶ 인정 실무경력</p> <p>① 화학 공정 및 장비에 관한 연구·설계</p> <p>② 화학물질 취급 등의 안전관리</p> <p>③ 화학 관련 생산업체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p> </td> </tr> </table>	<p>▶ 인정 실무경력</p> <p>① 화학 공정 및 장비에 관한 연구·설계</p> <p>② 화학물질 취급 등의 안전관리</p> <p>③ 화학 관련 생산업체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p>										
<p>▶ 인정 실무경력</p> <p>① 화학 공정 및 장비에 관한 연구·설계</p> <p>② 화학물질 취급 등의 안전관리</p> <p>③ 화학 관련 생산업체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p>												
② 경력	<p>■ 군 화생방 군사특기 교육을 이수하고, 화생방부대에서 화생방업무 근무경력이 <u>2년 이상인</u>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p>											
③ 학위	<p>■ 해당없음</p>											
비고												



소 방 청

National Fire Agency **119**